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고 병 준 의원)

| | |
|----------|-------|
| 의안 번호 | 24-13 |
|----------|-------|

발의년월일: 2024. 2. .

발의자: 고병준, 강동오,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안미자, 장정희, 채우진

1. 제정이유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구민 참여와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를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무장애 도시 구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

다.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관계법령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4. 2. 13. ~ 2. 19.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

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
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
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가능함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김미진 |
| 연 락 처 | 02-3153-8883 |